

# 문학경기장 대관 신청서

대관사용자는 본 문학경기장 대관 신청서 2쪽부터 3쪽까지의 「문학경기장 대관 허가조건 및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문학경기장 대관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1. 신청인

단체명		대표자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 2. 신청 내용

행사명			
대관 목적			
사용 장소		사용 인원	명
사용 일시	20 00 년 00 월 00 일 00 시 ~ 20 00 년 00 월 00 일 00 시		
중계 방송 여부	유 / 무	상업 사용 여부 (현수막 등)	m <sup>2</sup>
관람권 발행 여부	유 / 무 ※ 관람권 유료 발행 시 정산 자료 제출 필수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본인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고 주식회사 신세계야구단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일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필수적 수집 및 이용)

- 수집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 및 이용 목적 : 대관업무 및 시설물 복구
- 보유 및 이용 기간 : 회사는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 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개인 정보의 필수적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회사의 일반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고, 이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상세히 읽어 보았고 이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동의하는 바 아래와 같이 서명합니다.

위의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동의함 ( 성 명 ) ( 인 )

# 문학경기장 대관 허가조건 및 유의사항

## 제1조 목적

「문학경기장 대관 허가조건 및 유의사항」은 문학경기장 시설 원형의 보존 및 종사자 및 이용 시민의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본 문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인”이라 함은 주식회사 신세계야구단을 말한다.
2. “임차인”이라 함은 주식회사 신세계야구단에게 적절한 절차를 통해 문학경기장 대관 사용허가를 득하고 사용료를 납부한 대관사용자를 말한다.
3. “조례”라 함은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말한다.
4. “시설”이라 함은 문학경기장 내 모든 시설과 부속시설을 말한다.
5. “광장”이라 함은 문학경기장 북문광장 및 동문광장을 말한다.

## 제3조 대관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 2019. 7. 17.] [조례 제6218호, 2019. 7. 17.,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0-04-26>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0-04-26>

<삭제 1999-06-21>

② 제1항의 처분에 의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임대인”은 “임차인”이 “조례” 제16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대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이 본 문서에서 명시한 대관 허가조건 및 유의사항을 위반할 때 “조례” 제16조를 근거로 대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처분에 의해 대관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조례” 제16조를 근거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4조 문학경기장 대관 허가조건

- 공통 -

1. “임차인”은 대관 사용기간 중 “임차인”, “임차인”의 관계수급사,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관계수급사에게 고용된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내 발생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 민·형사 상의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2. “임차인”은 대관 사용기간 중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관계수급사에게 고용된 종사자 및 시민에게

---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임차인”은 대관 사용기간 중 “시설”의 원형 보존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4. 대관 사용기간 중 “임차인”의 귀책 사유 및 시민에 의해 잔디, 트랙을 포함한 “시설”의 손·망실이 발생할 경우 “임대인”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 또는 직접 복구해야 하며 그 기한은 대관 사용기간 종료 후 일주일 이내로 한다. 기한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임대인”과 협의해야 한다.
5. “임차인”은 “시설” 내 야구장, 축구장, 육상장에서 음식물 조리 및 판매를 할 수 없다.
6. “시설” 내 야구장, 축구장, 육상장 위 물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음식물 및 음료 섭취는 금지된다.
7. “임차인”은 대관 사용기간 중 “시설” 내 “광장”에서 음식물 조리 및 판매 행위를 할 경우 관할 구청 인·허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8. “임차인”은 체육경기 외 행사 진행 시 또는 자재 반입·출 시 야구장, 축구장, 육상장(트랙) 보호재를 설치해야 한다.
9. “임차인”은 행사를 위한 시설물 설치 시 반드시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10. “임차인”은 현수막, 홍보물 설치 시 반드시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시설” 내 수목을 이용할 수 없다.
11. “임차인”은 정리정돈 및 청소, 폐기물 반출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2. “임차인”은 정리정돈 및 청소, 폐기물 반출 등 사후관리 일체를 대관 사용기간 내 완료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대관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3. “임차인”은 시설물 및 부착물 일체를 대관 사용기간 내 철거하여야 한다.
14. “임차인”은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대인·대물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15. “임차인”은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시민 불편 요인에 대해 사전 홍보를 진행하여 민원 발생을 예방하여야 하고 행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민원 해결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16. “임차인”은 대관 중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시설의 철거 및 시설의 복구 이행을 보증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하여야 한다.
17. 본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시설” 사용 관련 협의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협의를 통한다.  
- 대규모 행사 진행 시 -
18. “임차인”은 대관 사용기간 중 “시설” 내외 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해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19. “임차인”은 대관 사용기간 중 “시설” 내 노점상이 출입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 “임차인”은 행사장 혼잡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정차 유도요원을 적절히 배치하고 차량 통행로 및 보행자 통행로를 구분하여야 한다.
21. “임차인”이 “시설”의 대관을 통해 진행하려는 행사가 재해대처계획 신고 대상일 경우 행사 안전관리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2. “임차인”은 행사 중 사고 발생을 대비한 사전 의료 매뉴얼 구축한다.

끝.